

의안번호	제600호
의결 연월일	2014년 1월 24일 (제326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4년 1월 8일

#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「학교체육 진흥법」의 제정(2013. 1. 27.시행)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(안 제2조)

- 1)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2)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
- 3)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 및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

### 나.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- 2)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

### 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1)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

### 라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3. 10. 11. ~ 2013. 10. 31.)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2. 「학교체육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
3.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 및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 과장과 교수학습 지원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위원은 학교체육, 생활체육,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충청북도 학교체육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
1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2.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간사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서면 심의)**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·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.

**제11조(의견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)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·운영하되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□ 학교체육 진흥법 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]

**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**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2.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
3.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
4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
5.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
6.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
7.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
8.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
9.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
10.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)**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과 시·군·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

## □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13.3.23.] [대통령령 제24423호, 2013.3.23.]

**제5조(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)**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

**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□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3.23] [교육부령 제1호, 2013.3.23.]

제4조(체력평가의 위탁)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,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
2.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